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 2026 - 010호

2026년 10차 타당성검토 외부연구원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외부연구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7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신규투자사업 및 신규투자사업(간소화) : 부문별 1명

2. 타당성검토 대상사업 및 부문별 금액

○ 신규투자사업

(단위 : 만 원)

사 업 명		연구원(부문별 1명)		과업 기간
		기술성	수요추정	
1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	2,000	7개월

※ 자세한 부문별 과업범위는 4.과업내용 참고

○ 신규투자사업(간소화)

(단위 : 만 원)

사 업 명		연구원(부문별 1명)		과업 기간
		사업계획	재무안정성	
1	심곡 3-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1,500	1,000	4개월

※ 자세한 부문별 과업범위는 4.과업내용 참고

3. 과업기간 : 세부사항은 계약 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착수일자는 별도로 공지함

4. 과업내용

○ 신규투자사업

1) 대전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항목		내용
사업 추진 주체		대전도시공사
사업 추진 근거		도시개발법
사업내용		• 위치 : 대전광역시 • 도입기능 : 주거, 상업
과업내용	기술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비용 추정
	수요추정	도입 기능별 수요 추정 등

○ 신규투자사업(간소화)

1) 심곡 3-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항목		내용
사업 추진 주체		부천도시공사
사업 추진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내용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 공공재개발사업
과업내용	사업계획	총사업비 및 종전가격 검토, 종후가격 산정
	재무안정성	지방공기업 재무안전성 검토(재무상태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비례율 산정

※ 추진일정 및 분석방법론 등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과제점검회의 및 성과품 보고회, 현지실사 등을 실시할 경우 참석해야하며, 과업은 투자분석센터 연구진과 협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자격요건 :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에서 수행하는 타당성검토와 관련하여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부문별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연구원

1. 기술사 · 건축사 · 회계사 · 변호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국가자격 취득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4. 기타 지방공기업 설립과 타당성검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제출서류

가. 연구원

1. 외부연구원 참여 신청서 1부
2. 외부연구원 이력카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외부연구원 참여신청서(별첨1), 외부연구원 이력카드(별첨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3) : 붙임 참조

※ 제출서류는 서명날인 후 PDF 또는 JPG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외부연구원으로 선정된 경우 학력 및 경력사항에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한 : 2026년 11월 2일 16:00까지

나. 접수방법 : 투자분석센터 홈페이지(inv.erc.re.kr)에서 접수(메일, 우편 등 신청을 불인정함)

다. 기타문의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담당자(02-3489-2765)

8. 선정절차

가. 외부연구원은 관련 규정 및 규칙과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평가원 내부심의를 통해 선정됨

나. 외부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며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력사항은 전문분야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원 선정 이후 외부연구원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학력 및 경력사항의 허위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연구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부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모집공고 기간 중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철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외부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